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2-018-151호

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**피 심 인** (사업자등록번호: )

의결연월일 2022. 11. 16.

# 주 문

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 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 (명)

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'21. 2. 20.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1. 7. 7. ~ '22. 7. 12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'21. 8. 5.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(건)

## 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 1) 유출 경과 및 대응

일시		피심인의 유출인지·대응 내용			
'21. 1. 15.	-	서비스 시작 ※ 이용자는 (웹), SNS 로그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접 속할 수 있었음			
'21. 1. 22. '21. 2. 15.	-	앱과 연동 개발 진행			
'21. 2. 16.	-	앱과 연동 테스트 실시 ※ 결제페이지 관련 소스코드 리뷰 및 테스트는 하지 않음			
'21. 2. 19.	-	앱을 통해 에 접속하도록 서비스 제공			
	18:00 ~ 19:00	에서 실시간 상품 판매			
'21. 2. 19.	18:21	개인정보 유출 상황 자체 인지			
	18:38	앱과 간 연동 중단			
'21. 2. 20.	15:47	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			
21. 2. 20.	16:31	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			
'21. 2. 27.	-	소스코드 수정을 통하여 오류 현상 제거			
'21. 4. 26.	-	서비스 종료			

# 2) 유출규모 및 경위

(유출항목 및 규모) 이용자 6명의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(유출 경위) 이용자가 ' ' 앱을 통해 '에 접속하여 결제단계로 넘어가면 연동 오류가 발생하여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됨

- 피심인은 서비스를 '21. 1. 15.부터\* 운영하였고, ' '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('21.2.19.)함

#### 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#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 '앱과 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배포하여 이용자가 ' '앱을 통해 에 접속할 때 결제 단계에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.

#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2. 10. 13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2. 10. 28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"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"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0-5호, 이하 '고시') 제4조제9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 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[보호법 제29조 (안전조치의무) 중 접근통제]

피심인이 앱 연동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
안전조치의무 위반 (접근통제)	보호법 §29	§48조의2① 제2호	・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(고시§4⑨)

# Ⅳ. 처분 및 결정

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 '과태료 부과기준' 및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2021. 1. 27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, 이하 '과태료 부과기준'이라 한다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.

#### <「보호법」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(단위:만원)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 제1항 또는 <b>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</b> <b>하지 않은 경우</b>	!! 세/5소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(과태료의 가중)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

피심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2) (과태료의 감정)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,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%를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<b>안전조치의무 위반</b> (접근통제 )	600만 원			

## Ⅴ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2년 11월 16일

- 위원장 고학수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